

인천지방법원 2021. 9. 17 선고 2021가단228560 판결 [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매매대금반환 청구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 (개명전 : C)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웅

피 고 D (개명전 : E)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9. 17.

주 문

1. 피고는 F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50,3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12. 17.부터 2010. 12. 6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남효정

별지